

(첨부1)

## 표준 약정서 제정(안) 주요내용

### 1. 제정 사유

- 정부에서 '18.9.13 발표한 “주택시장 안정대책”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한 「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」 금융행정지도(제2018-004호)를 반영

### 2. 제정 내용

#### ① (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)

-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징구(②~④의 경우 함께 징구)
- 주담대 관련 세대가 보유한 주택,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

#### ② (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)

-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이며, 1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구입하며 기존 주택 보유하는 경우 징구

#### ③ (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)

-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이며, 1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하는 경우 징구(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조건)

#### ④ (무주택자의 고가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)

-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이며, 무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(공시가격 9억원 초과)을 구입하는 경우 징구(2년 내 거주 조건)

#### ⑤ (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)

- 주택매수 목적이 아닌 의료비, 교육비 등 생활자금 조달 목적의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징구

### 3. 시행일 : '18. 10. 11